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평가 업무 소관 변경〉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78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평가 업무 소관 변경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1.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 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평가 업무 소관 변경

2025년 4월 발생한 SKT 해킹사고는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수년간 침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고 직전 SK텔레콤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매우 우수’로 평가했음. 현행 평가제도는 관리체계·법규 준수·불만 처리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침해사고 대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 관련 평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침해사고 평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생략)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u>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 -----,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u> 는----.

현행	개정안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한다.
<신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2025년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약 9.82GB 분량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IMSI¹⁾ 기준 약 2,696만건에 해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고 직전 SKT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매우 우수’로 평가하였으며, SKT가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던 사실조차 확인하지

1)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못했음에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평가 기능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이용자 보호 평가까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과 실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과기정통부 역할 >

구분	역할 내용	법률 조항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총괄	○ 침해사고 대응 기본계획 수립,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48조의2
한국인터넷진흥원 지휘·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침해사고 조사, 기술 지원, 긴급 대응 등을 수행하도록 지휘 및 관리	제48조의2 제3항
인력지원 요청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인력 지원 요청 등	제48조의2 제6항
사고 신고 및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원인 규명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요구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 침해사고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제48조의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에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총괄, 사고 신고 및 조치, 한국인터넷진흥원 지휘·감독, 사고 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평가 중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평가 기능의 명확화 필요

- 이용자 보호 평가 중에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적으로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한 후 필요한 부분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

여 해당 부분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법상 이용자 보호 평가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게 됨. 따라서 이용자 보호 평가와 관련한 부처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일관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임.

□ 이용자 보호 평가 주체를 행정청²⁾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평가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허가·승인·명령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의 주체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제29조³⁾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정보보호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조직에 불과하므로 법적 권한의 주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⁴⁾, 제17조제1항(사업의 경영)⁵⁾ 등 여러 조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승인 등 각종 행정처분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킹 등 침해 사고는 정보통신망의 보안 관리와 기술적 대응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사업의 경영)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수행에 있어서 규제 기관을 중복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단순한 침해사고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체계·법규 준수·피해 예방·불만 처리 등 종합적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타 법에서 침해사고 대응을 맡고 있으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임.

-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에 침해사고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기존 체계와 다른 관점에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평가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법률에서 이관되는 이용자 평가 업무가 어떠한 내용인지 핵심적인 부분은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 주체를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

경찰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이해관계자의 규제 기관 중복이나 다른 체계 운영 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